

## 정 관

### 제 1 조 명칭

본회는 미주 3·1 여성동지회라 칭하며 한국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 3·1 여성동지회의 유일한 해외 지회이다.

본회는 3·1 Women's Association in USA 로 표기한다.

미주 3·1 여성동지회 산하에 3·1 Society 를 두며, 본회인 한국 사단법인 3·1 여성동지회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Los Angeles County 안에 둔다.

### 제 3 조 목적

1. 본회의 본부인 한국 사단법인 3·1 여성동지회의 목적과 취지를 함께한다.
2. 미주 한인교민들과 차세대에게 3·1 정신을 통하여 민족 역사를 바로 알리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 시킨다.
3. 한국의 고유문화와 전통윤리교육을 도모하며 계몽한다.
4. 민족의식을 가지고 미주류사회에 공헌하며, 나아가 국제사회에 기여토록 한다.

### 제 4 조 사업 분과 / 미주 3·1 여성동지회 사업 분과

본회의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서를 둔다

\*분과

1. 총무부: 대내외 업무 총괄
2. 문화 교육부: 역사 교실, 글짓기대회, 태극기 교실,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 국가 행사 (3.1 절, 광복절 등) 참여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활동

3. 재무부: 각종 회비 및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을 통한 회계 전반 업무 (합창 부, 청소년 부 포함) 관장, 각종 Fund Raising, 총무부와 회장단의 승인을 얻어 각 분과에 협조하며 회계보고 및 세금 보고 등을 관장한다.

4. 봉사 사업부: 사회봉사, 장애인 봉사, 이웃돕기, 한인단체 협조, 운영 자금 증가 사업

5. 회원 관리부: 회원모집 및 유지관리

6. 음악 부:

1) 미주 3·1 여성합창단은 미주 3·1 여성동지회의 회원이 된다

2) 미주 3·1 여성합창단은 모든 계획과 행사를 미주 3·1 여성동지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7. 청소년 부 (3.1 Youth)-Leadership Training, 사물놀이

본회는 단일 운영체제를 갖고 있으며, 본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본회 산하에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 5 조 회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 : 본회에는 월례회, 임원회, 이사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임시 이사회를 둔다.

1. 월례회 – 매월 1 회 회원들의 정기모임

2. 임원회 –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3. 이사회 – 년 4 회(정기이사회)로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4. 임시 이사회 – 필요시 이사장 또는 회장에 의해 소집한다

5. 총회 – 년 1 회 12 월 중 개최한다.

6. 임시총회 – 필요 시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 (제 3 조)에 찬성하는 자로서 일반회원, 특별회원, 이사로 구분한다.

① 회원의 자격은 2 인의 이사의 추천으로 6 개월회비와 참석함으로 정식회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일반회원 : 모든 일반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특별회원: 자문위원과 고문 위원, 그리고 이사로 구분한다

- ① 자문위원: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 및 남녀구분 없이 선임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을 갖고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지원 성금은 납부할 수 있다.
- ② 고문 위원: 7 년이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이사회에서 인정된 자로서 타 지역 거주자 및 남녀구분 없이 선임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을 갖고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으나 지원 성금은 납부할 수 있다.
- ③ 이사: 이사 3 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동의로 선출된다. 본회의 실무를 집행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이사회 비를 납부한다. 이사회 비는 월 \$40 로 한다

4) 임원

\*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회원과 이사는 3 개월 이상 해당 회비를 체납하거나 회의에 참석 치 아니하면 자격이 정지되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체납 회비를 완납하고 해당 회의에 참가하던 모든 자격을 재 취득하게 된다. 단, 해당기간 동안 안낸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명 조건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선동하며 3.1 동지회의 뜻에 화합하지 않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즉, 카카오 톡 에다 남 홍보는 행위, 동의하지 않는 발언 및 무시 발언, 본회 경신, 욕설과 윽레회 때 다툼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제명한다.

## 제 6 조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

\* 총회

본회의 정기 총회는 년 1 회 4 월 중에 개최한다.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 인준한다.

\* 총회의 안건

1. 연간 사업 보고 및 결산 보고 승인
2. 차기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
3. 회장단 인준
4.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 승인

\* 임시총회 및 임시 이사회

정기총회 개최 전 또는 후에 긴급 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 이사장 및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모든 진행 절차와 방법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은 정기총회의 의결과 동일하여 즉시 시행에 옮길 수 있다.

## 제 7 조 임원

1. 명예회장: 대내외적으로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며 사회적으로 큰 공헌이 있어서  
존경받는 분이 된다.
2. 이사장, 부 이사장: 이사장 단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의 직무는 이사회를 관성 하여  
결정사항을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는다. 이사장 궐위 시 부 이사장 또는 회장이 이사장  
직을 대행하며, 외부에서 덕망이 있고 남녀구분없이 선출 할 수 있다
3. 회장: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진다.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기간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회장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12 월 31 일 회장이 임원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그 수는 1 인 이내로 한다. 회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하여  
총괄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의 공석 시에는 수석부회장은 회장 공석 사유일로부터 20  
일 내에 이사회 의 가결을 거쳐 선출된 자가 결정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각 부서의 부장은 부회장이 되며 분과의 책임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 의  
동의를 얻는다. 해당 분과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계획 실행하며 모든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며 상의한다. 각 부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에서 재선출하여 잔임기간까지 대행한다

6. 총무(2 인) : 회장단을 보필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 서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8. 재무(2 인) : 본회의 제반, 수입 지출을 담당, 기록하며 년 1 회 감사를 받는다
9. 감사(2 인) : 본회의 감사를 담당하며 년 1 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0. 사무장 : 본회의 회장단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 제 8 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참석 인원의 2/3 이상 승인으로 결정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제 9 조 이사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년 4 회 정기 이사회와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1. 의결  
이사의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참석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며 총회에 상정하여 의준을 받는다.
2. 안건
  - 1) 각 분과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심의
  - 2) 각 분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 3) 이사장, 회장단, 각 분과 책임자 선출 및 해임 동의
  - 4) 각 집행 부서의 신설 및 폐기에 대한 심의
  - 5) 이사들이 상정하는 기타 안건들을 심의하여 절차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

## 제 10 조 정관 개정

정관이나 세부 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회장이 5 명 이상의 정관 의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비영리단체의 통 상례에 따른다.



정관 인준 일자: 제 33 회 정기 총회 2015 년 4 월 28 일

정관 인준 일자: 임시이사회 2023 년 3 월 9 일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